

2010. 9. 14. (화) 10:00

제16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제2차 본회의

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[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0. 08. 27
- 나. 제 출 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0. 08. 30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0. 09. 09
- 마. 의안번호: 제2010 - 35호

2. 개정이유

-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신설하고,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 시기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, 증인 선서의 방식 및 실비 보상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 등을 명확히 하며,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 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조항을 간명화 함(안 제1조).
- 나.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명확히 규정함(안 제2조제2항).

- 다.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신설·추가하되, 출자·출연법인에 대하여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경우로서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하도록 함(안 제5조제1항제4호·제6호 신설).
- 라.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.
-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함
 -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함
- 마.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한 준용 규정을 관계 법령에 맞게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로 변경함(안 제9조제5항).
- 바.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 보상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을 의회소관 조례인 「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(안 제9조의3제3항).
- 사.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법률적인 검토결과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제41조, 제42조, 제146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, 제56조,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

- 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- 6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7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- 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